제3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서산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6호)

2026. 10.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66호

○ 제 출 자 : 서산시장

○ 발의일자 : 2026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26년 10월 1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현행 조례는 시설물 사용 신청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정당한 사용료 반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계약 해제·취소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시설물 사용 취소·해제 시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이용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추가 (안 제8조)

나. 각 반환 조항에 “전액 반환” 추가 (안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

다. 명시되지 않은 반한 조건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반환 기준 추가 (안 제8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Ⅲ. 검토의견

1. 개정목적

○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이용자에게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정비하여, 기존의 포괄적인 반환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156조 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57조 제1항에서도 수수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8조)

- 개정안 요지 :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반환대상 및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 ------- ---------- - 납부된 사용료---------- --.

- 검토의견 :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반환대상 및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예측가능성과 권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사용료 변환 원칙의 명확화 (안 제8조 제1항)

- 개정안 요지 :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를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반환'으로 정비하려는 사항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8조(사용료의 반환) ---------- ----------. ------- ---------- - 납부된 사용료---------- --. 1. ---------- ---------- 경우: 전액 반환

- 검토의견 : 도서관의 귀책 또는 운영상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불가항력 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 마련 (안 제8조 제2항)

- 개정안 요지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를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반환'으로 정비하는 사항임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제8조(사용료의 반환) ---------- ----------. ------- ---------- - 납부된 사용료---------- --.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인하여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검토의견 : 천재지변 등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항임

마. 사용자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 완화 (안 제8조 제3항)

- 개정안 요지 : 사용 5일 이전이라는 제한과 시장의 '상당한 이유'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신청자가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함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의 반환) ---------- ----------. ------- ---------- - 납부된 사용료---------- --. 3. ----------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 검토의견 : 현행 규정에 비해 이용자의 취소권을 확대하고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임

- ‘사용 5일 이전’ 및 시장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취소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바. 사용료 반환기준의 구체화 (안 제8조 제4항)

- 개정안 요지 : 조례에서 직접 정하지 않은 사용료 반환사항에 대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사용료의 반환) ---------- ----------. ------- ---------- - 납부된 사용료---------- --. 4. 그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체육시설업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검토의견 : 유사 공공체육시설 조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이용자의 반환기준을 객관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과제 반영】

○ 서산시는 2026. 1. 5.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따라

○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를 개선과제로 관리하도록 관련부서(시립도서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해당 조례는 소비자권익제한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 따라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현행 조례의 사용료 반환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취소·환불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명확함

5. 종합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시립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존의 포괄적인 반환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사항임

나. 도서관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자의 허가취소에 따른 반환 제한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의 개선과제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